

한 국 보 험 계 리 사 회

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507

☎ 782-7440 FAX 782-7441

한보계 제12 - 38호

2013. 2. 25

수 신 대표이사

참 조 선임계리사, CFP관련 상품.계리담당자

제 목 CFP특별위원회 질의사항알림 2차 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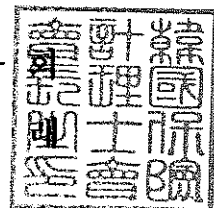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회 CFP특별위원회에서는 CFP시행에 따른 기초서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, 그에 따른 업계 질의사항을 취합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 자료를 알리는 바입니다.

3. 첨부관련 알림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actuary.or.kr) 공지사항에도 공지하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CFP관련 Q&A(2차). 끝.

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
회 장 박 상



CFP 관련 Q&A (2차)

Q. 보험사는 최적위험률 산출시 어떻게 검증확인을 받아야 합니까?

A. 보험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2항에 따라 최적위험률 산출의 적절성을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검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최적위험률 확인의뢰 양식은 [붙임]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최적위험률 산출 확인의뢰 양식

- 최적위험률 산출방식 : A/E ratio 방식, 손해율방식, 기타
- 최적위험률 산출단위별 작성양식
 - 확인대상 위험률 : 최적 경험사망률
 - 기준위험률 : 무배당예정경험사망률 (남자 40세 또는 기준연령)

구분	경과연도 또는 가입연령 (예시기준 : 경과연도)									
	1년	2년	3년	4년	5년	6년	7년	8년	9년	10년+
최적위험률 ($a=b \times c$)										
기준위험률 (b)										
A/E 비율 [$c=d \times e \times (1+f)$]										
지급률 (d)										
선택효과(e)										
추세(f)										

- 기타
 - 예시는 A/E ratio 방식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이며, 회사는 최적위험률 특성에 따라 양식 수정 가능
 - 보험료분석보고서에 최적위험률 기술시 외부확인기관의 확인 근거 기재